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(한기호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3091호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(안 제9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